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8가단963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오승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원소연, 강호균, 명재연, 안정근

변 론 종 결 2020. 9. 8.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5,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5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0. 19:07경 자전거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 부근 왕복 6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탓에, 피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바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D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자세한 경위는 별지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로 위 버스의 승객들이 다쳤고, 이에 소외 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그들에게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아래와 같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E : 66,540,220원 = 위자료 30만 원 + 기타손배금 352,000원 + 휴업손해액 21,073,980원 + 직불치료비 374,700원 + 입원비 41,753,070원 + 통원비 2,687,150원 - 단수 절사 680원

F : 5,696,510원 = 위자료 25만 원 + 기타손배금 368,000원 + 휴업손해액 1,735,032원 + 직불치료비 42,300원 + 입원비 2,523,630원 + 통원비 127,420원 + 직불치료비 440,130원 + 보조기 21만 원 - 단수절사 2원

G : 1,217,010원 = 위자료 30만 원 + 기타손배금 48,000원 + 휴업손해액 177,952원 + 통원비 505,190원 + 직불치료비 211,820원 - 단수 절사 25,952원

H : 603,690원 = 위자료 15만 원 + 기타손배금 56,000원 + 직불치료비 110,480원 + 향후 외상치료비 20만 원 + 통원비 93,210원 - 단수절사 6,000원

I : 364,190원 = 위자료 25만 원 + 기타손배금 16,000원 + 직불치료비 8,630원 + 향후

외상치료비 45,000원 + 통원비 45,560원 - 단수 절사 1,000원

J : 1,497,890원 = 위자료 25만 원 + 휴업손해액 266,928원 + 향후 외상치료비 49만 원 +

입원비 497,890원 - 단수 절사 6,928원

[인정근거 : 갑 제1, 2, 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잘못과 버스 운전사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그 중 50%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 신호변경에 임박하여無理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음(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원두막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하고는 길을 건너기 위해 허리를 숙여 전속력으로 달리느라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버스 운전자 : 보행자신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미처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

(2) 피고의 책임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신호변경에 임박하여無理하게 큰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더구나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넜다), 피고의 과실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5112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50%의 책임만을 묻겠다고 하므로, 이하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인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법리 및 관련 약관조항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공제약관1)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되, ‘무직자와 학생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갑 제29호증 29쪽)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함’(갑 제29호증 34쪽)이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E(무직) : 무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휴업손해’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E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다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직자의 경우에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E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나, 공제금(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범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원고가 약관에 따라 E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E이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전부터 앓던 ‘척수손상’ 등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고, 기왕증의 사고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치료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제금(직불치료비, 입원비, 통원비) 중 50%에 대해서만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결국,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구상범위는, 11,529,390원[= 피고의 책임비율

$50\% \times \{66,540,220\text{원} - \text{휴업손해액 } 21,073,980\text{원} - \text{기왕증 기여도 } 50\% \times (\text{직불치료비 } 374,700\text{원} + \text{입원비 } 41,753,070\text{원} + \text{통원비 } 2,687,150\text{원})\}$ 이다.

F(가사종사자), G(가사종사자), H(무직), I(학생), J(학생) : 원고는 J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므로 공제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위 약관에 의하면 학생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원고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J로부터 아르바이트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그 수입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휴업손해의 지급은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J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이 위 공제약관에 반하는 과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공제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구상범위는 F에 관하여 2,848,255원($= 50\% \times 5,696,510\text{원}$), G에 관하여 608,505원($= 50\% \times 1,217,010\text{원}$), H에 관하여 301,845원($= 50\% \times 603,690\text{원}$), I에 관하여 182,095원($= 50\% \times 364,190\text{원}$), J에 관하여 615,481원[$= 50\% \times (1,497,890\text{원} - \text{휴업손해액 } 266,928\text{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085,571원($= 11,529,390\text{원} + 2,848,255\text{원} + 608,505\text{원} + 301,845\text{원} + 182,095\text{원} + 615,481\text{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1) 이사건사고당시의약관은아니나내용은대체로같은것으로보인다.